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
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
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6월 9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05/31
이창우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290호

서울특별시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민간운영자”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(주민자치위원회 위원, 자원봉사자) 및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제②항 혹은 제④항에 의하여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,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.

제11조제5항 중 “동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제1항 중 “25명 이내로 구성하되,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”를 “지역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되,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” 로 하며, “2명 이내의 고문”을 “3명 이내의 고문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1/3 이상”을 “40%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7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제7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자는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.
- ⑨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⑩ 분과위원회의 구성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

□ 개정 이유

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(제17조 제1항, 제3항)

1) 위원 2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, 2명 이내의 고문에서 3명 이내의 고문으로 확대

2) 여성위원 비율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에서 40%이상으로 확대

나. 주민자치위원 연임시 임기 내 4시간 이상 교육이수 의무화 신설 (제17조 제8항)

다.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(제17조 제 9~10항)

라. 자치회관 민간운영자의 책임 규정 및 실비지급 등 주민 자율관리 규정 신설 (제2조 제3호, 안 제7조 제9항, 안 제13조 제3항)

마. 자치회관 시설보험 가입 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(제11조 제5항)

바.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

1) 「서울특별시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

→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